환경위생분야 서비스 이행기준

1.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업무 서비스 향상

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성실한 납부 안내를 통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.

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전화 또는 방문 시 신속 정확하게 안내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2. 배출시설허가 및 신고업무 신속처리

◈ 구비서류 중 구청에서 확인 가능한 공부는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직접 확인 처리하겠습니다.

◈ 1일 이상 유기한민원 접수 시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. (10일→7일, 5일→3일)

3.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로 깨끗한 환경조성

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.

◈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접수 후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.

◈ 석면 조사, 처리 및 관리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석면에 의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4. 먹는물 공동시설 및 지하수 관리 철저

◈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전년도 검사결과에 따른 등급별 차등(연 3~8회) 실시하고, 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게재하여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◈ 음용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음용중지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용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.

◈ 월 1회 이상 약수터 주변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생적인 약수터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.

◈ 깨끗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생활용수는 3년에 1회, 음용수는 2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수질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5.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

◈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.

◈ 분기별 무료점검 및 지속적인 육안감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배출가스에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.

6. 식품 위생관리 강화

◈ 안전한 식품 생산·유통체계 확립과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부정·불량식품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국민다소비식품, 계절적 성수식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·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.

◈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시설, 뷔페, 대형음식점(300㎡이상), 도시락 제조업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생 지도·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.

◈ 식중독 예방 상황실 및 부정·불량식품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확산 차단 등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7. 식품위생업소의 시설·환경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

◈ 음식점 등 위생업소의 시설·환경 개선과 시설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, 업소환경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위생 및 친절예절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위생 의식을 고취시켜 질 좋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.

◈ 위생상태가 우수하고 친절한 모범음식점을 연 1회 이상 선정, 지정관리 함으로써 위생적인 시설개선, 서비스 수준향상 및 좋은 식단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.

8. 공중위생업소의 관리 강화

◈ 업종별 위생관리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고 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하여 건전한 공중위생업소를 육성, 관리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
◈ 공중위생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,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모범적인 공중위생 서비스 문화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.

9. 서비스별 접수·문의창구

서 비 스 명	담 당	전 화 번 호	팩 스 (FAX)
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	환경관리담당	220-4381~7 220-4407~8	220-4389
환경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환경오염원관리 (배출시설, 비산먼지공사장 점검)	환경지도담당	220-4391~9 220-0082, 0084~6 220-4388	
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및 지하수 관리 석면안전관리	환경보전담당	220-4421~5	
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	식품위생담당	220-4410~9	
공중위생관련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	공중위생담당	220-4401~4	

10.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

◈ 법령위반사항 신고 시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신고하여 주시고 민원처리사무규칙에 의거 신고인의 신분을 사실대로 밝혀주셔야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. 신고자의 신분은 법령에 의거 비밀로 절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.